

2012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Ⅲ

대기업 횡포에 골목상권이 무너진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2012. 10.

국회의원 **김영주**

(민주통합당 · 정무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하며

재벌 대기업이 떡볶이, 순대까지 팔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면 동네 포장마차이던 구멍가게이던 가리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기업프랜들리를 주창하며 친기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대 99’로 상징되는 극단적 양극화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119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배정의가 무너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가 깨져버린 상황이 새삼스레 헌법적 가치를 곱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야에서 대기업의 횡포로 한숨 짓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판매권한을 불법적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지

불하겠다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서슴없이 침해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겨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기업의 횡포를 적발하고 규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검찰을 자임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명드는 자영업자 보호에는 소홀해 왔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료집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2. 10

국회의원 **김영주**

글 차례

자료집을 발간하며	5
1. 현황	9
2.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가맹계약 사례 ...	10
1)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12
2) 위약금 관련	17
3) 계약 종료 후 동일업종 창업 금지 관련	24
4) 겸업금지 관련	27
3. 대안	29
<부록1> 담배사업법 중 소매인지정 조항	31
<부록2>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32
<부록3>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3

1. 현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또는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¹⁾

이런 가맹사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큰 자본 없이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형태다. 2010년 말 현재 170,926개의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 및 직영점은 20,793개였다.

2011년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직영 및 가맹점 현황

사업자명	직영점	가맹점	합계
(주)비이에프리테일	142	6,544	6,686
(주)GS리테일	105	6,202	6,307
(주)코리아세븐	87	4,528	4,615
(주)바이더웨이	32	1,478	1,510
한국미니스톱(주)	34	1,641	1,675
합계	400	20,393	20,79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제출자료

1) 2012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업이 확대되면서 가맹본부인 대기업들이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래형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854건의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을 처리했는데,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인 84%는 경고 처분이었다.

연도별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 처리 실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정명령	0	2	5	14	7	11	28	23	48	138
경고	1	7	29	16	39	84	338	142	60	716
계	1	9	34	30	46	95	366	165	108	854

출처:2012공정거래백서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맹본부별로 재무제표, 가맹계약서 등을 담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 2,431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되어 창업희망자들의 창업여부 판단여부를 돕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공개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실제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달라 창업 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2.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가맹계약 사례

1)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크, 간판 등의 외관, 상품의 선도 등 품질성, 상품구색, 청결함, 유니폼,接客방법, 편리함 등 뛰어난 특색을 갖고 독특한 인상으로 정착해서 폭넓게 인식되고 친근감을 주며, 이런 이미지가 7-ELEVEN점의 신용을 지탱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 '7-ELEVEN 이미지'라고 한다.)

제9조 허락의 범위(사양, 설비등의 임의 변경 금지등)

① '을'은 제8조의 권리를 개점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일까지 7-ELEVEN점을 경영하기 위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제3장 각 조의 규정 및 7-ELEVEN 시스템에 위반되는 매입, 판매, 그 외 영업을 하는 것
 2. 점포의 구조, 사양, 형상, 내외장, 디자인, 배색, 영업용 설비, 점내 레이아웃, 상품진열등은 모두가 고안하고 연구된 7-ELEVEN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갑'의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변형하는 것
 3. 전 조 제2항 제4호에 기재한 7-ELEVEN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그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4. 경영기밀을 그 일부라도 제3자('갑'이 확인한 '을'의 종업원 제외)에게 누설하거나 7-ELEVEN의 경영이외에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것 및 그 외의 '갑'의 기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갑'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5. '갑'의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이라는 상호나 제3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 ② '을'은 전항의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10조 경영의 허락과 지역

- ① 7-ELEVEN점의 경영에 대한 '갑'의 허락은 '을'의 점포가 소재하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을'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은 '을'의 점포로부터 도보거리를 기준으로 50m이내에 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을'이 개점에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토록 한다.
- ③ 전항의 협의는 '갑'과 '을' 상호간에 신점포 개점에 따르는 '을' 점포의 영업이익 변화 등에 대한 합리적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1조 '을'의 투자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기로 하고 그 명의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지정서상의 명의는 '갑'으로 한다
2. 당 점포에서의 담배소매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와 그 제3자의 담배소매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그 제3자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과 '을'간의 본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갑'은 동일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세븐일레븐 상호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들과 맺는 계약 내용 중에 불공정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 명의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담배를 판매하는 가맹점주가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코리아세븐이 담배판매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경쟁업체의 출점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담배광고수수료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기존 담배소매점과 50m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와 광고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있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정도로 단일품목 가운데 가장 높고, 다른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매개 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점 영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코리아세븐의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세븐은 이 같은 이유로 891개 가맹 점포의 담배판매인을 법인

이 지정받고 있다.

세븐일레븐 직영·가맹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2012.8)

구분	소매인 지정형태 (법인/개인)	법인번호	지정 점포(개)	계	비고	
전체 가맹점	법인 (주)코리아세븐	110111-0899976	87	87		
	개인	법인 (주)코리아세븐	110111-0899976	800	800	
		소진세	-	50	91	(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 2010.2.~
		주우환	-	10		(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 2007.7.~
		정 황	-	2		(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 2005.2.~
		신동빈	-	29		(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 1999.5.~
		일반인	-	3,444	3,444	
	소계				4,335	
합계				4,422		

<출처:기재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을 코리아세븐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매인협회 가입비나 협회비는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상대방인 ‘을’의 권리도 취하면서 그 경제적 부담까지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포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가맹점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 등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 그 책임을 소매인지정을 받은 코리아세븐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진다는 것이다.

별첨 (7)

‘을’이 부담하는 비용

항 목	내 역
임차비용	- 전액(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도세 기타 임차계약상 임차인의 비용부담. 단, 전기세는 하단의 전기료 규정에 의함)
보험료	- 본 계약서에 의거 ‘을’이 부담하는 보험료
스목 및 명찰	- 점포 직원의 단체 스목 및 명찰 단, 가맹 신규전환 초기 6명은 ‘갑’이 제공(반드시 신품은 아님.)
폐기상품	- 유통기일 경과 상품 및 파손 상품
현금부족	- 금전등록기(POS)상 판매대금과 실제 부족액
제세공과금	- 휴게음식점,음반비디오 면허세,주 담배협회비등 점운영관련신고 비 등의 각종 비용과 세금
재고 상품 부족	- 장부 재고액과 실제 재고실사 금액과의 차이 부족액 단, 실제 재고액이 장부상 잔고액 초과시에 초과분 불인정
특별 재고실사 비용	- 전액
특별광고 판촉비용	- 특별 광고 판촉비
건물관리비	- 건물관리비의 100%
종업원 인건비	- 종업원 인건비 등
전기료	- 점포 운영에 있어 전기료의 50%
통신비	-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화료 및 전용회선(POS) 사용료
소모품비	- 전산 소모품비(전산기기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전산용지 등) - 점 운영 및 판매에 필요한 소모품 예)점명표시판, 책상,의자, 서류함, (소화기) 소평용구류, 앰프,스피커, 감시카메 라, VTR, 전화기, 청소용구류, CTR설치대, 방범거울,화이트보드, 라벨기, POS 리본, 시음용컵,비닐포장지,스트로우, 머드,냅킨,포크, 기타
시설등 유지보수비	-점포시설(콘도라,볼트,인테리어,출입문,조명시설),비품(가구,금고등) 및 판 매용 시설기계에 따른 수선,부품교환,건물유지보수(상· 하수도 교체 공사 비등)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간판청소 및 A.S
기타비용	- 상기 이외의 제 비용으로서 ‘갑’이 점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는 비용과 세 금 예)교통 유발 부담금, 청소원청소비,전기안전관리 대행료,오물 수거료, 점입구 보수비,점포와 관련 벌과금, 범죄와 재해손실,현금도난,부도수표,상,하수도료, 가스료, 기타

매가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 사유를 별첨양식(3)에 의한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과의 협의를 한 후 그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갑'은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판매가격 변경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가격은 회사와 '을'에 의해 설정된 총매출액, 재고금액, 재고조사, 장부기록,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의 기준이 된다.

제4장 점포 설비의 보전과 관련 제비용

제33조 점포 등의 보전

① '을'은 7-ELEVEN점의 점포 건물내의(구조 부분을 포함한다) 장비 및 내,외장 시설·집기·비품·재고품 등 경영에 제공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밝게 정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소·손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② 전항 물건중 '갑'이 대어한 장비 및 내,외장시설에 대한 관리, 교체, 추가, 수리 및 그 비용부담등은 별첨(4)에 의한다.

③ '을'이 본조 제1항의 보전 관리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72시간이 경과해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그 보전을 위한 행위를 시키고 그 비용을 '을'의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을'에게 부담시키도록 한다.

제34조 점포에의 출입

'갑'은 전항 보전 상황의 조사, '을'에 대한 조언을 위해 언제든지 점포 건물의 내외에 출입할 수 있다.

제35조 제세 공과금의 부담

7-ELEVEN점의 점포 건물에 있어서의 사용에 의해 매월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단,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등의 수도광열비에 대해선 별첨(7), 별첨(8)에 의한다.

제36조 '을'의 손해부담과 보험가입

① '갑'과 '을'은 보험의 가입, 보험금의 수취 등에 있어서는 별첨(5)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을'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점 운영과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 인명손상 및 재산상 손실(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점포, 장비설비 기타 시설에 대한 재산상 손실 포함)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점 운영과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별첨(5)에 기재된 보험(의료보험, 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등)을 책임진다. '을'은 점관련 모든 재산상 손실, 인명손상, 행정상의 제재 및 기타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위약금 관련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은 후 점포가 개점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맺고 있다.

해지시기에 따라 위약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점포 인테리어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는 위약금으로 300만원을 부과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투자된 금액 및 철거비용 일체와 위약금 800만원 부과,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공사에 투자된 금액 및 철거비용 일체와 위약금 1,500만원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점포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소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에 대한 위약금으로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에 코리아세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300만원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③ '을'이 연수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전항의 재교육의 결과 재차 불합격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며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4조 교육비용

'을'은 제12조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갑'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비 및 교재료, '을'의 숙박비, 여비의 일부 등의 실비를 포함하는 교육비용으로서 금 삼백만원(W3,000,000)(VAT별도)을 부담한다. 이 교육비는 가맹가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교육비용의 반환

- ① '을'이 재교육까지 수료했으나 재차 불합격한 경우 '갑'은 전조의 교육비용중 금 일백오십만원(W1,500,000)(VAT별도)을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다.(추가교육인원의 경우는 50만원 전액 반환불가)
- ② 전항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을'이 정해진 교육의 전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참석교육일수를 불문하고, 교육비용은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개점준비

'갑'은 '을'의 개점에 대비해서 7-ELEVEN 시스템에 근거해서, 7-ELEVEN 이미지에 따른 점포계획을 세워서, 이에 의한 건물의 건축 및 수리방법, 내외장 디자인, 레이아웃 등을 '을'에게 제시하고, 점포내에 '을'에게 대어하는 장비 및 대어하는 내.외장 시설물을 반입, 설치하고, 판매상품의 진열, 판매용구를 갖추는 등의 작업을 하고, 또한 개업전단 인쇄, 배부 등 선전광고를 하여서 소정의 일자에 즉시 개점영업이 될 수 있도록 '을'을 위하여 일체의 준비를 갖추어 이를 일괄하여 '을'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개점준비 수수료 및 점포운영 준비금

'을'이 '갑'에게 지급할 개점준비수수료(개점관측비용 등)는 가맹가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점포운영준비금(상품,집기,소모품,환전준비금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이는 별첨(6)에 따른다.

제19조 개점전 계약해지

- ① '을'이 형편에 따라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에 대하여 개점일 7일전까지 문서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고, 즉시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에게 준비단계에 따라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제20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포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은 금 삼백만원(W3,000,000).

2. 점포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착수이후 완료이전에 있어서 별첨(4)의 장비를 반입, 설치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은 금 팔백만원 (₩8,000,000).

그 외에도 '갑'이 부담한 그 때까지의 점포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 및 시설철거비용의 손해가 있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선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3. 점포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점포내부에 별첨(4)의 장비를 반입, 설치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계약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은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만약서 '갑'에게 반환하거나 '갑'이 직접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갑'은 가맹보증금등 '을'로부터 '갑'에게 건네진 여하한 명목의 금액에서 다른 규정에 의해 반환되지 않는 금액외에도 전항의 위약금 및 제반비용등을 공제한 후 즉시 반환한다.

제20조 문서등의 반환

① '을'은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해지된 경우 또는 '을'이 제19조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를 한 경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항의 계약 해지일 및 해지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의 점포 계획에 따라 행해진 건물의 건축내지, 개수공사에 대해서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 부분의 범위의 변경공사, 간판등의 파기, 레이아웃의 변경등을 하고 7-ELEVEN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구조 디자인, 내 외장, 배색등)을 잔존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7-ELEVEN 이미지를 해치고 또한 유사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는 해지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제1항에 있어 5일을 경과하거나 제2항에 있어 7일을 경과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일천만원으로 하고, 이 경우 '갑'이 직접 반환, 변경등을 할 수 있으며, 반환, 변경비용은 제13조 제3항의 경우는 '갑'의 부담이고, 제19조 제1항의 해지의 경우는 '을'의 부담이며, 이 조항은 다른 규정 등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장 영업활동

제21조 개점일

'갑'은 '을'이 최초 영업을 개시하는 일자 를 개점준비 완료의 목표일로 잡고 그 일자 를 사전에 별첨양식(1)에 의해 '을'에게 통지한다.

제19조(개점일 계약해지) ① ‘을’이 형편에 따라 개점일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개점일 전까지 문서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갑’에게 개점 준비단계에 따른

1.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착수 이전 해지 시, 금 삼백만원
2.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착수 이후 해지시, 금 일천오백만원과 해지시까지 ‘갑’이 부담한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비용과 철거비용 일체

제20조(문서 등의 반환) ① ‘을’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 해지된 경우 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를 한 경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1항의 계약해지일 및 해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의 점포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건물의 건축 내지 레이아웃의 변경 등을 하고 7-ELEVEN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구조 디자인, 내·외장, 배색 등)을 존중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7-ELEVEN 이미지를 해치거나 유사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있어 5일을 경과하거나 제2항에 있어 7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을’이 ‘갑’에게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갑’이 직접 반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제13조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제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다른 규정 등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업 활동

제21조(개점 점검 및 인수) ‘을’은 개점일에 맞추어 ‘갑’으로부터 점포 설비, 개점시의 재고품 집기, 비품, 소모품 등을 일괄 인수받아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만일 점검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 ① ‘을’은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7-ELEVEN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 본인은 물론이고 ‘을’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하여금 7-ELEVEN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업종(편의점, 슈퍼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고상품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폐기) ① ‘을’은 ‘갑’의 경영지도·지원을 기초로 하여 7-ELEVEN점에 적합한 상품의 구성(종류·수량·품질)에 주력하며, 결품·상품부족·선도 또는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7-ELEVEN 이미지가 실추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발주 및 재고 상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영업상 통상적인 재고로스 및 폐기의 범위(그 범위는 별첨(7)에 따른다)를 지켜야 하며, 재고로스 및 폐기에 대한 부담은 별첨(7)에 따른다.

③ ‘을’은 주문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적정한 매입으로 인하여 전1항의 규정 위반하는 것은, ‘을’뿐만 아니라 다른 7-ELEVEN점의 신용저하를 초래하여 7-ELEVEN 이미지에 상을 끼치게 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되며, 또한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 재고로스 및 폐기의 범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됨을 확인한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던 중에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또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코리아세븐은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액 및 철거비용이외에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점일 이후 2년 미만 시에는 코리아세븐이 지급받아온 월 평균 수수료의 12개월분을 배상해야 하고, 2년 경과 시에는 8개월분의 금액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가맹계약 내용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며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한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제2009-073호를 통해서 “(주)바이더웨이의 가맹계약서상 제46조(해약금) 갑 또는 을이 제45조에 따른 해지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을 통하여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해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출총이익 x 3개월) + (매출총이익 x 잔여개월 x 1%)”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제51조 중도해약과 위약금

'갑' 또는 '을'이 전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상전에 문서로 그 취지를 예고하고 다음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점포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산존액 및 시설, 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 대해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1.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에는 상대방의 수수료 평균 월액 12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2.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수수료 평균 월액의 8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1. '을'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공언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을'이 가맹계약 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②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허락의 범위) 각항, 제11조('을'의 투자) 각항, 제12조(교육) 제5항, 제22조(개점점검), 제23조(무휴영업 및 영업시간과 검업금지) 각항, 제24조(재고상품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폐기) 각항, 제25조(POS등록(레지스터 등록) 및 장려금등) 제26조(매출금의 송금)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상품의 매입)제4항, 제30조(준수사항) 각항, 제32조(판매가격의 결정) 제1항, 제33조(점포등의 보전) 제1항, 제36조('을'의 손해부담과 보험가입) 각항, 제40조(현장 재고조사 및 결과통보)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을'의 담보제공), 제65조(점포의 대리운영)의 하나라도 중대하게 위반을 한 경우
 2. '갑'의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7-ELEVEN점의 영업 및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고 또는 7-Eleven의 경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혹은 그 경영을 타인에게 이양 혹은 경영을 포기하고, 경영의 전반 내지 실질적 부분에서 24시간 방치하였을 때
 3. '갑'의 허락에 의해 부여된 권리 및 7-ELEVEN 시스템에 관한 입문서, 자료(제공의 유, 무상은 불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곳에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 대여, 이용에 제공(유, 무상 불문)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시켰을 때
 4. 현장재고조사를 거부했을 때
 5. 기타 '갑'에 대한 중대한 불신행위를 한 경우
- ③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이 중복된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5.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9조(계약의 자동 해지) 본 계약은 ‘을’의 사망(법인의 경우는 해산), 금치산 내지 한정치산의 선고, 파산 선고, 점포 건물의 자연 재해에 의한 소멸 등의 사유에 의하여 즉시 소멸한다.

제50조(합의 해지, 특별사정에 의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에 문서에 의한 합의 해지의 약정을 성립시켜서 본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암·에이즈·사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의 발생이나 법령에 의한 점포 폐점 및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은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시설 공사 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 철거

제51조(중도해지와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제50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철거 비용을 ‘갑’에게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1. 개점일 이후 2년 미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수수료 X 12개월

2. 개점일 이후 2년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수수료 X 8개월

② 전항의 경우 평균 월 수수료는 전항의 문서로서의 통지 전 1년간(개점일부터 통지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을’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8.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허락의 범위) 각항, 제10조(‘을’의 투자) 각항, 제11조(교육) 3항·4항, 제16조(‘을’의 담보제공), 제22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 각항, 제23조(재고상품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폐기) 각항, 제24조(POS 등록 및 장려금 등) 1항·2항, 제25조(매출금의 송금) 각항, 제26조(판매촉진 및 매입협력) 3항, 제27조(상품의 매입 등) 3항, 제28조(판매가격의 결정) 1항, 제30조(관련 법규의 준수 등) 1항, 제33조(점포 등의 보전) 1항, 제34조(점포에의 출입), 제36조(‘을’의 손해부담과 보험 가입) 각항, 제40조(현장 재고 조사 및 결과통보) 1항·2항의 어느

중대하게 위반을 한 경우

2. 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7-ELEVEN점의 영업 및 주요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갑’의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7-ELEVEN점의 경영자 지위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타인에게 이양 하는 등 경영의 전반 내지 실질적 부분에서 점포 운영을 24시간

3) 계약 종료 후 동일업종 창업 금지 관련

코리아세븐은 해지, 기간만료 등에 의해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코리아세븐과 경쟁하는 편의점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가맹계약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을”은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한의원을 운영할 시에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을]을 가맹점주임)”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관련 조항의 수정, 삭제를 시정권고 조치했다.

② '갑'과 '을'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도 '을'이 7-ELEVEN 상표,의장, 명칭,기호를 사용하거나 7-ELEVEN 시스템에 관한 경영기밀 저작권 등을 사용 또는 모방하거나

③ '을'은 해지, 기간만료등에 의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장소에서는 '갑'의 편의점사업과 경쟁하는 편의점사업에 직,간접으로 운영,종사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갑'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개칭

본 계약의 각 조항에 규정되어진 내용이 사회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또는 계속되는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체계의 변화 등에 의해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한다.

제63조 파트너의 책임

'을'의 점포운영의 파트너(이하 '병')는 이 계약에 있어 '을'의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는 모든 책임을 연대보증한다.

제64조 '을'의 담보제공

① 전조와는 별도로 '을'은 새로운 프랜차이즈 본계약상 '을'의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부동산담보(근저당권) 5,000만원 또는 부동산담보(근저당권) 3,000만원과 별첨양식 (7)에 의해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인 1인(재산세 + 종합토지세 = 10만원 이상인 자)을 제공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액이 담보물의 선순위담보액등을 공제한 잔여담보가치(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의 50%이하를 충족하는 근저당권(토지, 건물)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을'은 동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당초 담보설정시의 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담보설정후에도 담보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는 경매취소등이 있을 때까지는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담보액에 달할 때까지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을'이 본조 제1항,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점포의 대리운영

'을'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실제 운영자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첨양식 (8)에 의한 위임장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을’이 지급받을 금액이나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을 이의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장 제칙

제60조(개정) 본 계약의 각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이 사회·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또는 계속되는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체계의 변화 등에 의해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한다.

제61조(문서에 의한 명확화) 이 계약의 각 조항 중에 정해진 통지, 통보, 최고, 동의, 승낙 등은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2조(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인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인

③ ‘을’은 해지, 기간만료 등에 의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 장소에서는 ‘갑’의 편의점사업과 경쟁하는 편의점사업에 직간접으로 운영·종사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전 1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이 ‘갑’의 7-ELEVEN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동의하는지 여부, 신규 가맹계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및 ‘정’이 7-ELEVEN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하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갑’이 전 1항의 동의를 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을’은 제30조 제3항에 준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5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을’과 ‘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과 ‘병’으로부터 취득하거나 향후 상거래로 인하여 취득할 아래 각 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을’ 또는 ‘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로서, ‘을’과 ‘병’은 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을’ 또는 ‘병’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 등)
2. 신용거래 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 현황 포함)

4) 겸업금지 관련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하면서 과잉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가맹점주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코리아세븐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업종(편의점, 슈퍼 등)에 대한 종사를 금지하는 겸업금지 조항에서 그 대상을 가맹점주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시정권고 제2009 - 013호에서 “(주)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상 제 31조 (겸업금지) ② “을”은 본 조의 겸업금지의무를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2년간 부담한다” 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사업자는 관련 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그리고 2006년 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맹계약서상 갑의 문서에 의한 사전승인을 얻지 않는 한 을은 본 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19조(개점 전 계약해지) ① '을'이 형편에 따라 개점일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개점일 전까지 문서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갑'에게 개점 준비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58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착수 이전 해지 시, 금 삼백만원
 2.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착수 이후 해지시, 금 일천오백만원과 해지시까지 '갑'이 부담한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 비용과 철거비용 일체
- ② 전항의 경우에 '갑'은 가맹보증금 등 '을'로부터 '갑'에게 건네진 여하한 명목의 금액에서 다른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지 않는 금액 이외에도 전항의 위약금 및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문서 등의 반환) ① '을'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 해지된 경우 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를 한 경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1항의 계약해지일 및 해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의 점포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건물의 건축 내지 레이아웃의 변경 등을 하고 7-ELEVEN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구조 디자인, 내·외장, 배색 등)을 존중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7-ELEVEN 이미지를 해치거나 유사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있어 5일을 경과하거나 제2항에 있어 7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을'이 '갑'에게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갑'이 직접 반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제13조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제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다른 규정 등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업 활동

제21조(개점 점검 및 인수) '을'은 개점일에 맞추어 '갑'으로부터 점포 설비, 개점시의 재고품 집기, 비품, 소모품 등을 일괄 인수받아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만일 점검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 ① '을'은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7-ELEVEN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 본인은 물론이고 '을'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하여금 7-ELEVEN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업종(편의점, 슈퍼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주문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매임으로 인하여 전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을'뿐만 아니라 다른 7-ELEVEN점의 신용저하를 초래하여 7-ELEVEN 이미지 손상을 끼치게 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되며, 또한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 재고로스 및 폐기의 범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됨을 확인한다.

3. 대안

이처럼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가맹계약을 수년째 맺어왔다. 그러나 코리아세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은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규율해야 할 공정위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편의점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견인해야 할 부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자영업자 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공정위의 조속한 직권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한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위와 같은 불공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가맹본부의 횡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19대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자영업자 스스

로 가맹본부의 횡포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

<부록1> 담배사업법 중 소매인지정 조항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부록2>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
----------	----

발의연월일: 2012. 5. 30.

발 의 자: 김 영 주 의원

찬 성 자: 126 인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8년 10만7천개에서 2010년에는 14만9천개로 불과 2년만에 40%난 증가할 정도로 창업 희망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반면에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

한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영업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가맹점에 불합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불과 3년만에 2.5배나 증가하였음.

이에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서 창업희망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

록 하며,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고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
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

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거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등) ① 가맹본부가 이 법 제9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제6항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의2에 의한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설립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 공 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 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u></p>

있다.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거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등) ① 가맹본부가 이 법 제9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2에 의한 영업지

<p><u><신 설></u></p> <p>⑦ ~ ⑧ (생 략)</p>	<p><u>역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u></p> <p><u>5.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설립 을 방해한 자</u></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	---

<부록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12. 9.

정 무 위 원 회

I. 개 요

1. 제안일자 : 2012. 5. 30.

2.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26인

3.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8년 10만7천개에서 2010년에는 14만9천개로 불과 2년만에 40%난 증가할 정도로 창업희망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반면에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영업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가맹점에 불합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불과 3년만에 2.5배나 증가하였음.

이에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서 창업희망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

맹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며,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고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1. 영업지역 보호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해당 권고를 준수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⑦ ~ ⑧ (생 략)</p>	<p>제1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p> <p>⑥ _____</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2조의2에 의한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5.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설립을 방해한 자</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최근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하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지역 보호를 포함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²⁾을 마련하고 주요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적 도입을 유도중임.

【 업종별 영업지역 보호 거리(모범거래기준) 】

	제과·제빵	치킨	피자
대상 가맹본부	2개	5개	2개
보호 거리 ³⁾	500m 거리제한	800m 거리제한	1500m 거리제한
도입 시기	‘12.4.	‘12.7.	‘12.7.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의 수가 적으며, 동 기준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영업지역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⁴⁾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2) '12년 상반기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가맹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신규출점을 인정하는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중임.

3)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①3천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거나 ②철길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4) '프랜차이즈 77.9% 영업지역 보호 못 받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24288)

특히, 최근 취업난과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지역의 침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함을 감안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지역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참고 1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 쟁점 등 참조).

다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측은 가맹사업의 업종과 특성이 다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계약⁵⁾이므로 이에 대해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지역 보호 기준은 가맹본부

5) 현행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자율적 도입형식이 바람직⁶⁾하고,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는 행정지도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법체계상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지역 보호기준을 설정하여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시행중인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동 권고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영업지역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점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권고에 따른 영업보호 기준을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 및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가맹본부의 모범거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6) 영업지역 분쟁은 주로 가맹점 수가 많은 소수 상위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로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가맹본부에 적용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⁷⁾,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⑦ ~ ⑧ (생 략)</p>	<p><u>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거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_____ _____ ----. 1. ~ 4. (생 략) 5. <u>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설립을 방해한 자</u> ⑦ ~ ⑧ (현행과 같음)</p>

이는 상대적 약자로 평가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의 구성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균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⁸⁾.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가맹점

7) 단체 설립방해시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8)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매출 및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협회)를 구성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만들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음(‘10.6.15.).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상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불공정한 경쟁 제한 행위의 발생⁹⁾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2006년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단 단체 구성 방해행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¹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맹점사업자

9) 개정안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여러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및 가격 등에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브랜드간 로열티수준, 원부재료 판매가격 등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경쟁을 실종시켜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10) 제14조의2(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단체결성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별도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독립적인 상인으로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대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음.

3.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고의·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의 손해 배상 등) ① 가맹본부가 이 법

행위

2.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본부에 부당한 계약내용의 설정이나 정당하게 설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2.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가맹사업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u></p>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함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제3자의 장래 유사한 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맹사업 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임(참고 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참조)11).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상 실손해배상의

11)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에 배치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남소로 인한 기업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가맹분야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주로 특정가맹점으로 한정되어 과급효과가 적고, 타 분야에 비해 소제거나 피해입증이 어려운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가맹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부분은 현행 가맹법상 공정거래법 준용조항(제37조 제3항¹²⁾) 의해 공정거래법 제56조¹³⁾가 준용되어 있어 이미 도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음.

12)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은 사업자가 행한 법률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